

## 1. 머리말

지난 1970년 1월 1일 石油事業法이 제정된 이후 석유 수요 증가에 따른 석유판매업소의 난립과 그로 인한 국민경제의 손실을 막기 위한 석유판매업 허가제 도입, 석

# 석유사업법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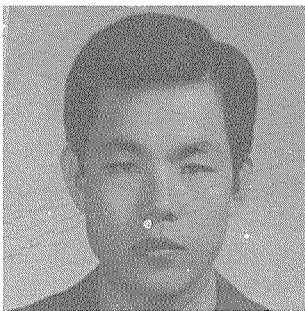
유가 국민경제와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 조정명령 대상의 확대, 유사시 석유배급 조치등을 주요개정내용으로 석유사업법 전문개정을 1975년 7월 23일 시행하였으며, 1977년 12월 31일 석유사업 기금 설치의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 제2차 개정과, 부산물인 석유제품에 대한 규제와 과징금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제3차 개정을 1982년 12월 31일 시행한 후 제4차 개정이 1986년 5월 12일 법률 제3839호로 시행되었다.

금번 제4차 개정은 이 법 제정 당시의 꺾박했던 석유의 사정을 반영하여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측면이 근간이 되어 있는 반면, 제품의 유통면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다소 미흡한 취약점이 대두되었다.

특히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운영의 기본질서로 채택하고 있는 자유주의의 경제에 있어서 가격은 물론 품질과 유통경로도 공급자 상호간에 경쟁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석유제품의 공급과정이 처음에는 과점 상태에서 출발되었고, 품질도 시장경쟁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충족하지 못하여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를 통한 법률적인 제재가 뒤따르게 된 것이다.

결국은 그동안 에너지 수요구조와 공급측면이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등 입법환경이 바뀌고 행정수요가 변화하는등 주변환경의 변화가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재정동기에 따라 추진된 석유사업법과 시행령 개정 내용의 추진 배경과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金 永 俊  
(에너지경제연구원 파견관)

● 석유제품의 공급과정이 처음에는 과점상태에서 출발되었고, 품질도 시장경쟁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충족하지 못하여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를 통한 법률적인 제재가 뒤따르게 된 것이다. ●

## 2. 石油事業法 개정내용

### (1)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 가. 개정사유

경제·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바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양질의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사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석유제품의 판매행위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석유정제업 등의 양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동안 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낸 미비점들을 보완키 위한 것이다.

#### 나. 개정내용

-결격사유에 금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였다. (제 5 조)

● 석유정제업과 석유판매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허업 허가의 특성이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거래를 요구하고 있는 현대경제사회에서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고 신용사회로의 발전을 통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관허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키 위한 것이다.

다만, 동규정이 입법화 됨으로서 기존업체가 이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가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도록 부칙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양도, 합병의 경우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제 8 ~ 9 조)

● 일반적으로 양·수도 행위에 대한 정부의 인가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행정관청의 보충행위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입법례의 경우 사업의 영위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양·수도의 법률행위를 요인가행위로 하는 경우와 승계의 사실행위를 신고토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석유정제업의 양·수도등에 대하여 인가제를 채택하였던 입법목적은 사업 주체가 변동되더라도 허가요건의 심사를 통하여 석유사업법의 입법목적이라 할 수 있는 안정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키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다른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자율성 확보와 기업설립의 경쟁 제한요소를 배제하고 행정 수요 경감을 통한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 공하는 한편, 그 석유정제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이해관계에 있는 제3 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은 취지에 따라 석유정제업과 석유판매업의 양도·양수등에 대한 인가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시킨 것이다.

-석유판매업의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제12조 제 2 항)

● 석유판매업의 종류는 시행령 제2조 정의에서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시비가 없지 않았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판매업의 종류를 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으나, 판매업의 종류는 국·내외 사정과 시장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과 신속한 행정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법에서는 근거만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이를 보관, 적재·운송하여 석유판매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된 장소에서는 일정기간 동일종류의 석유판매업 허가를 금지하였다. (제12조 제3항)

● 석유판매업이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 취소일로부터 2년동안 당초 허가받은 동일인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없도록 제5조 결정사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허가 취소된 장소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 타인의 명의로 다시 허가를 취득할 경우 위법사항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버리는 모순이 현실적으로 정형화되고 있어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유통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입법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동일장소에서 제3자에 대하여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례는 식품위생법과 유기장업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그러나 휘발유 유사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한 공익상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제3자에게 미치게 하여 일정기간 동일장소에서 석유판매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일반법의 원리와 석유판매시설 사용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사회일반의 통념과 같은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고도로 복잡다기화 되어가는 산업사회에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로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행정이 추구하여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던져주는 한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 석유정제업·수출업·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을 명확히 하였다. (제13조 제1항~제3항)

● 기존법에서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들에 대하여 개개의 상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영업정지기간의 한계가 없이 되어있어 처분청의 재량이 극대화되는 한편, 운영에 따라서는 허가 취소나 사실상 구별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영업정지 한계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여 행정 운영상의 모순점을 개선하였다.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을 추가 규정. (제13조 제1항~제3항)

● 행정처분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행위, 차별적 거래행위, 생산감축·중단 또는 출고 제한행위, 가격위반행위, 매점·매석행위,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보관·적재·운송하는 행위,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였다.

● 기존법에서는 상기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 없이 벌칙만을 가하는 규정을 두어 왔으나, 벌칙에 의한 규제보다는 1차적으로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를 통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해당사자의 권익보호에 유익한 것으로 이같은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 특히 제13조 제3항 제5호를 신설하게 된 것은 법령에서 판매업소의 종류와 이들 판매업소가 취급하게 될 석유제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판매소에서는 취급유종이 아닌 병커씨유 등 중질유를 판매하고 있어 이로 인한 유통질서의 문란과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기 위한 것이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정유시설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정유시설의 능력에 관한 권고 또는 조정을 동력자원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7조 제3항)

● 종전의 석유사업법에서는 조선공업진흥법, 기계공업진흥법 등의 입법례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내·외사정에 대처할 수 있는 관련산업 합리화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변화하는 국내석유사정과 국제에너지 정세에 대처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에너지 경제의 정책방향에 부합시킬 수 있는 국내정유산업의 구조조정·유도가 어려운 실정으므로 조정명령의 발동 범위에 정유시설 능력에 관한 권고 또는 조정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 석유사업기금의 용도에 “석유수송시설”을 추가하였다. (제17조의 4, 제1호)

● 경질유 수요의 급증에 따른 경제적 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장거리 송유관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동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것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보관·적재 또는 운송할 수 없도록 행위금지사항으로 추가함. (제22조 제 2 항)

● 유사석유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요인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판매업자가 동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취소나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정지를 받음은 물론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에게 행정 처분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함. (제 13조의 3)

● 동력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및 석유판매업자에게 범위만을 이유로 허가 취소나 사업정지 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 이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석유사업법에서도 이같은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과태료 처분의 관련제도를 신설. (제28조 제 3 항~ 제 6 항)

● 종래에는 과태료 처분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급변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동력자원부장관이 하고,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고,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국세채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석유판매업 허가업무와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처분과 그 징수는 사실상 시·도지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판매업에 대한 모든 권한은 법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시행령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법에서 과태료의 처분·징수 근거를 시·도지사에게 주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3.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은 법개정(86. 5. 12, 법률 제38329호)에 따른 관련 사항과 그동안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작업으로 일괄 축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국제 원유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석유사업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사정이었으므로 편의상 석유사업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기타 법에서의 위임사항 등을 다음에 추진하여 2차에 걸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1) 1차개정(대통령령 제11903호, 86. 5. 19)

가. 개정사유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석유사업기금이 비축·개발, 안정기금 등으로 구분, 징수하게 되어 있어 기금간의 상호전용이 불가능하여 기금운영상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기금조성 규모가 종전에 비하여 확대됨에 따른 기금활용의 효율성이 낮고, 기금의 용도가 석유비축, 개발 및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 석탄·전원개발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에너지절약 관련산업과 에너지개발관련사업의 지원을 통한 총 에너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청되는 등 현안문제들이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한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나. 개정내용

-동력자원부에 석유사업기금 운용심의회를 설치하였다. (제12조의 3, 제 1 항)

● 석유사업기금 관리, 운용에 있어 국민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였다. 심의회에서는 기금관리, 운용지침, 기금운영계획, 기금의 결산보고,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심의회 구성은 동력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동자부 소속 공무원중 소속 장관이 지정하는 1급공무원과 동력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제반문제들은 동심의회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것은 국민투자기금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비축기금·개발기금·안정기금을 통합하여 석유사업기금으로 일원화. (제14조 제 1항)

● 비축·개발·안정기금으로 구분, 징수하고 이를 사용할 때도 구분, 집행하므로써 기금간의 상호전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탄력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이들 기금을 석유사업기금으로 일원화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 용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금 징수한도를 3.15¢/ℓ에서 12.00¢/ℓ로 상향 조정. (제14조 제 1항)

● 수입석유에 대하여 석유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석유사업기금의 수입금의 징수금액을 종전에는 수입석유 1리터당 미합중국통화 3.15센트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국제원유 가격의 하락폭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석유 1리터당 美합중국통화 12센트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를 상향 조정하였다.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다. (제16조 제 1항 및 제 3항)

●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에 석유수송사업, 가스사업,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및 정유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가하므로써 극히 한정되었던 기금의 용도를 에너지 관련사업에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제17조)

● 석유사업기금에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얻은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인 금융기관에 예입하거나 국제, 공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한 통화안정증권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과 재정자금의 예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여유자금의 운용은 일시적으로 자문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므로 기간이 장기간 되는 경우는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 2차개정(대통령령 제11965호, 86. 9. 22)

가. 개정사유

석유사업의 제4차 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키 위하여 개정이 추

진된 것이다.

나. 개정내용

-유사석유제품 취급으로 인한 허가 취소시 재허가 금지기간 명시. (제 9 조 제 5 항)

● 법 제12조 제3항에서 유사석유제품 취급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 허가가 취소된 석유판매업과 같은 종류의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기간을 6월이상 1년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을 6월로 정하되, 동허가 취소 처분을 받기전 3년동안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는 당해 석유사업법 위반 전과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초범자와 누범자를 구분 징계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같이 특정인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장소, 시설 등 물적 요소에까지 제재가 가해지는 것으로 이 부문에 대해서는 법 개정시에도 상당한 의견들이 있었으나 유사 석유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석유사업 수입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5조 제 2항)

● 국내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납부하고있는 기금 및 관세등이 원유가 도입되어 통관되고 다시 제품으로 정제되어 이들 제품이 판매되어 석유제품 가격으로 회수되는 시점이 통관후 약 70~100여일 후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실제로 통관시점에서 납부하여야 함으로 천재지변이나 화재, 기타 재해 등으로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국제 원유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입금의 규모가 증대하여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으로 수입금의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수입금 중 일부의 납부기한을 납부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유사업기금 환급대상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석유사업기금 환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5조 제 5항)

● 종래에는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주한 국제연합

● 법 개정이 자주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을 개정하여야 할 필연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다 긴 시간들을 가지고 진지하고 심도있게 검토되고 다시 검토되어 법에서 사용될 낱말 하나하나를 다듬고 다듬어서 개개의 조문이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군 기관이나 외국 선박 또는 외국 항공기에 대하여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윤활유기유와 나프타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석유의 수입시에 징수한 수입금을 환급하여 왔으나, 기금징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항공기와 국내 선박에 대해서도 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관세환급과 기금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우리나라의 항공기와 선박에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환급하도록 하여 당해제품의 생산에 “원료”로 소요되는 분만을 환급하도록 하였다.

- 기금의 용도중 “석유자원의 탐사 및 시추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를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자금의 용자”로 하고, 석유개발공사의 석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필요한 “자금”으로 개정하였다. (제16조 제1항)

● 이는 기존법령이 정하는 기금의 용도에는 탐사 및 시추단계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 유전개발사업의 생산이 본격화되고, 특히 국내 대륙붕 개발사업이 성공하여 생산단계에 들어설 경우 막대한 생산자금이 소요될 것에 대비키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석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에 한정하지 않고 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으로 확대하였다.

- 도지사 등이 그 관할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석유판매업자인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대리점 등의 판매구역에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이 포함될 때에는 관계 도지사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도지사 등이 그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없는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이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등에게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였다. (제25조 제2항, 제5항)

- 기타 청문의 절차와 과태료 등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하였다. (제24조의 2, 제27조)

#### 4. 맺는 말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85년 3월 최초로 안이 작성된 이후, 내부 검토와 입법예고를 통한 각계의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당정협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체처에서 오랜 시간을 다듬고 다듬으면서 정부안이 최종확정되어 국회에서의 강도깊은 질의와 응답을 통한 심의를 거쳐 86년 5월 12일 공포, 시행되고 이에 대한 시행령이 정부내에서의 제반절차를 거쳐 86년 9월 22일 공포,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심으로는 무척 지루하고 짜증스러운 순간들이 계속되었음도 숨길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을 마치면서 보다 깊게 느끼는 것은 법 개정이 자주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을 개정하여야 할 필연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보다 긴 시간들을 가지고 진지하고 심도있게 검토되고 다시 검토되어 법에서 사용될 낱말 하나 하나를 다듬고 다듬어서 개개의 조문이 완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서도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행정의 시간성을 보다 신속하게 충족시켜야 하는 실무자로서의 고충이 더욱 더 크게 작용되었다는 표현이 솔직한 변명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만,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짜증스럽고 상대의 의견이 타당함을 알면서도 실무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그때 그때를 모면하여 넘겨 버린 부분들이 없었나를 반성하면서 공직생활을 통하여 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었음이 자신에게는 더 없는 보탬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보다 훌륭한 석유사업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